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4. 4. 11.
시민보건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4. 4. 6.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1994. 4. 6.
- 다. 상정일자 : 제22회임시회 제1차위원회 (1994. 4. 11)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시민국장 강신재)

가. 제출이유

폐기물관리법·동법시행령·동법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 전문의 개정에 따라 법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1) 일반폐기물 분리보관 및 배출규정을 정함
 - 대형생활폐기물·건축물폐재류 배출시 신고 의무화
 - 폐기물 종류·성상별 보관시설·용기설치 의무화
- (2)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의 대행계약 내용 정함
- (3) 일반폐기물 처리업자 준수지침 정함
 - 인력·장비 시설확보 기준 등
 - 지도·감독 의무 규정
- (4)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 (5) 일반폐기물수수료 종량제 실시에 따른 필요사항을 정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건제)

가. 동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종전 재산세 및 건물면적등을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책정된 쓰레기수거료 부과금제에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부담하는 일반폐기물수수료종량제를 도입하여 발생원인자 부담원칙을 적용하고,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시 3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신고토록 신고의무규정을 신설하는 등 일반폐기물의 분리보관 및 배출방법등을 대폭 변경하였슴.

나. '92년초부터 실시한 쓰레기분리수거제는 쓰레기감량화나 재활용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가 낮고 생활화되지 않아 좀처럼 정착되지 않고있는 실정이며, 구에서도 쓰레기처리비에 대한 수거료의 비율이 너무 낮아 재정적자의 큰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다. 집행기관에서는 동조례의 제정과 병행하여 청소장비·인력관리의 효율적인 운영, 요금부과체계의 합리적 개선 및 종량제폐기물의 수집·운반관리체계의 확립등 청소행정의 제도개선을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및 답변요지

- 질의(이종일 위원) : 일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는 어떻게 실시하는가?
- 답변(작업계장 황동연) : 현재 서울시 3개구가 실시하고 있으며, 1개월에 1인당 60리 리터의 봉투를 무료로 공급하고, 2종분류로 지금보다 수수료납부액이 줄어들 수도 있음. 마포구는 1995. 1. 1 시행예정으로 현재 실시중인 타구의 제도를 참작하여 적절히 실시하겠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약: 없 음

8. 기타사항: 없 음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

의안 번호	288
----------	-----

재출년월일: 1994. 4. 6
제 출 자: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폐기물관리법·동법시행령·동법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전문의 개정에 따라 법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일반폐기물 분리보관 및 배출규정을 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대형생활폐기물·건축물폐재류 배출시 신고 의무화
- 폐기물 종류·성상별 보관시설·용기 설치 의무화

나.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의 대행계약 내용 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다. 일반폐기물 처리업자 준수지침 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 인력·장비 시설확보 기준 등
- 지도·감독 의무규정

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함(안, 제11조 및 제26조)

마. 일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실시에 따른 필요사항을 정함(안, 제12조 내지 제25조)

3. 제정근거

- 폐기물관리법(1993. 3. 6. 법률 제4541호)
- 폐기물관리법시행령(1993. 6. 24. 대통령령 제13914호)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1993. 9. 9. 총리령 제431호)

○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1994. 3. 31. 조례 제3082호)

4. 조례(안): 별첨

5. 예산조치: 해당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이하 “시조례”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이하 “시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일반폐기물은 폐기물의 종류와 성상에 따라 시조례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일반폐기물 관리구역) ①서울특별시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전구역을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한다.

②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의 경계가 하천·공원·도로·고가차도·터널 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 있어 일반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계에 인접한 해당 구청장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시장이 조정·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 폐기물 관리구역을 조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구보에 고시하고 이해 관계인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지체없이 다음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일반폐기물 관리구역 조정사유 및 결정서
2. 일반폐기물 관리구역 조정지역의 지번·면적·도시계획상 용도·관계지적도·임야도 등 부속도서
3. 일반폐기물 관리구역 조정에 따른 관리대책

제 4 조(일반폐기물 관리구역 제외지역의 지정 또는 해제) 시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관리구역 제외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2 장 일반폐기물의 배출 및 수집·운반·처리

제 5 조(일반폐기물 분리보관 및 배출) ①일반폐기물 배출자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수집·운반이 용이하게 대형생활폐기물·건축물폐재류 및 기타 일반폐기물(대형생활폐기물·건축물폐재류를 제외한 일반폐기물)로 나누어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1. 대형생활폐기물: 배출 3일전에 배출자의 주소·성명·물품명·크기·수량등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내어 놓아야 한다.
2. 건축물폐재류: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다량배출신고를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한 후 일반폐기물(건축물폐재류) 처

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한다.

3. 기타 일반폐기물: 보관시설이나 용기에 담아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집·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이 종류·성상별로 보관 또는 배출방법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 6 조(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①일반폐기물 배출자는 일반폐기물을 종류·성상별로 분류할 수 있는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규격·재질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 7 조(일반폐기물 광역처리 규약의 내용) 시조례 제11조에 의한 일반폐기물광역처리 규약에는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자치구간의 재정부담 비율과 부담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 8 조(일반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의 대행) ①구청장은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업자(이하 "일반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및 기간
2. 대행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 배출량 및 수집·운반·처리방법
3.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형식별 대수
4. 환경미화원 임금에 관한 사항
5. 차고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6.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시 대행방법·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

7. 기타 법 제17조의 허가요건 및 조건 구비여부

제 3 장 일반폐기물 처리업의 지도감독

제 9 조(일반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지침) ①

구청장은 일반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일반폐기물 처리기본계획과 전년도에 실시한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의 지도감독 결과를 분석하여 일반폐기물 수집·운반방법·인력·장비시설의 개선방안 및 확보기준(대체포함) 등을 포함한 일반폐기물 처리업자 준수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업자는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및 작업방법 등을 시장 또는 구청장의 일반폐기물처리업자 준수지침에 맞추어 확보·개선·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일반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구청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하여 시설·장비·기술능력 확보상태·일반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 준수여부와 요금과징의 적정성·행정지시 이행상태를 년2회(반기별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 4 장 일반폐기물의 수수료 부과·징수

제11조(수수료등의 부과·징수 등)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관한 수수료 등의 금액·세입처리·납기·가산금 및 감면등은 시조례 제14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5 장 일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실시

제12조(종량제 실시) ①구청장은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안에서 시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이하 “종량제”라 한다)를 전지역 또는 일부지역에 대하여 이를 실시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부 지역에서 종량제를 시범실시할 경우에는 시범대상지역을 행정동 단위로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종량제실시대상 일반폐기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중 종량제실시대상 일반폐기물(이하 “종량제폐기물”이라 한다)은 가정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로 하되 연탄재·재활용품은 제외한다.

제14조(폐기물의 배출방법) ①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를 실시하는 지역안에서 종량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구청장이 제작·공급하는 관급규격봉투(이하 “규격봉투”라 한다)에 이를 담아 묶은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중 종량제 실시대상이 아닌 연탄재·재활용품·다량폐기물·대형생활폐기물·건축물폐채류 등의 배출방법은 종량제를 실시하지 않는 지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다.

제15조(규격봉투의 종류 등) ①규격봉투는 가정용기본봉투(이하 “기본봉투”라 한다)·가정용추가봉투(이하 “추가봉투”라 한다)및 사업장용봉투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봉투 및 추가봉투에는 가정폐기물을 담고 사업장용 봉투에는 사업장폐기물을 담는다. 다만, 추가봉투에는 기본봉투를 모두 사용하고 추가로 가정에서 배출되는 종량제폐기물을 담는다.

제16조(규격봉투의 색깔·크기 및 용도·재질) 시조례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 봉투의 색깔·크기 및 용도·견픔·재질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규격봉투의 색깔은 기본봉투는 미색·추가봉투는 옐로우(주황)색·사업장용봉투는 옐로우 청색으로 한다.

- 2. 규격봉투의 크기 및 용도는 별표1과 같다.
- 3. 규격봉투의 견종은 별표2와 같다.
- 4. 규격봉투의 재질은 고밀도 또는 저밀도 폴리에틸렌으로 한다.

제17조(규격봉투의 제작) ①구청장은 시조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 실시지역내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인구수 및 가옥·사업장수에 따라 규격봉투의 소요량을 정확히 파악 제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격봉투의 용도 및 크기별 수량은 가정 및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종량제폐기물의 배출주기와 배출자의 사용편의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안배 제작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규격봉투 전면에 구의기관명과 문장·용량·용도·주의사항 등 필요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8조(규격봉투의 공급·판매) ①동장은 시조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봉투를 공급함에 있어 당해 봉투를 사용하기 5일전까지 각가정 및 지정판매소에 공급하여야 한다.

②기본봉투는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인구수에 따라 각 가정에 공급하고, 추가봉투 및 사업장용봉투는 월 단위로 지정판매소에 공급하여야 한다.

③기본봉투를 공급한후 전입한 주민에 대하여는 전입한 날부터 금회에 공급한 봉투의 사용이 종료되는 날까지의 남은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기본봉투를 공급하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주민에 대하여는 전출일까지의 소정의 사용량을 공제한후 잔여 봉투를 회수한다.

④추가봉투 및 사업장용봉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장이 공급한 지정판매소에서 배출자에게 개별 판매한다.

제19조(규격봉투의 관리) ①구청장은 시조례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봉투가 외부로 불법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종료후 동판을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회수한 동판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작완료된 규격봉투는 가능한 한 당일 해당 동사무소에 인계하고, 인수한 동장은 밀폐된 창고에 보관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규격봉투의 날개포장은 봉투의 안전관리·수량파악·배분작업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량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제20조(규격봉투 공급기준) ①시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가정에 공급되는 기본봉투의 양은 1인당 60리터 기준으로 한다.

②기본봉투는 무상공급하고 추가봉투 및 사업장용봉투는 지정판매소를 통하여 배출자가 개별구입 사용하여야 한다.

제21조(판매소의 지정) ①구청장은 규격봉투 판매소를 지정함에 있어 인구·면적·가옥 및 사업장수를 고려하여 배출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적정한 위치 및 업소수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판매소에 대하여는 일정율의 판매이윤을 판매인에게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이윤의 비율은 구청장이 지정판매인과 협의하여 따로 정하되 최고 판매이윤은 9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③구청장은 종량제를 실시하는 지역내의 배출자가 규격봉투 판매소임을 쉽게 알수 있도록 별표3의 지정판매소 상징도안을 부착하고 이를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제22조(판매인의 준수사항) ①지정판매인은 규격봉투를 판매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 1. 규격봉투의 용도 및 크기별로 충분한 물량 확보
- 2. 규정요금 준수
- 3. 위조·유사봉투 진열 및 판매금지
- 4. 규격봉투 공급대금(일반폐기물 수수료

등)기한내 납부

5. 기타 행정 지시사항

②구청장 및 동장은 제1항 각호의 이행 상태를 수시 확인 점검하여 위반 행위를 미리 예방함과 아울러 배출자가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23조(판매소의 지정해제) ①구청장은 제22조제1항 각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판매인을 적발하였을 때에는 판매소의 지정해제 등 위반정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소를 지정해제 하였을 때에는 그 즉시 다른 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24조(종량제폐기물의 수집·운반 등) 구청장은 규격봉투에 담은 종량제폐기물에 대하여는 연탄재 등 다른 일반폐기물과 구분하여 수집·운반하는 별도의 체계를 확립하여야 하고 시범실시 기간중 규격봉투의 종류별 배출량과 수도권 매립지에서 계근한 실중량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제25조(규격봉투 수수료의 부과·징수 등) 종량제폐기물의 수수료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 시조례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6 장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6조(과태료 부과 등) ①법 제63조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에 대한 과태료 부과등은 시조례 제27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7 장 보 칙

제2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처리비·과태료 등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쓰레기 봉투의 크기 및 용도(제16조제2호 관련)

봉투용량 (ℓ)	봉투크기 (가로×세로cm)	용도
10	33×40	가정용 기본
20	41×49	가정용기본·가정용추가·사업장용
50	56×67	가정용추가·사업장용
100	71×85	가정용추가·사업장용

비고 : 1. 실제 사용할 쓰레기 봉투제작시에는 봉투상단에 봉투용량에 포함되지 않는 여분을 두어 쓰레기를 담은 후 묶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여분부분의 표시는 굵은선으로 하며, 여분의 길이는 다음식에 의해 산정하되, 소수첫째자리에 반올림한다.

$$\text{여분의 길이(cm)} = \frac{\text{가로길이(cm)}}{\pi} + 5\text{cm}$$

규격 봉투 견본(제16조제3호 관련)

○ 20 ℓ 용량

(직영 봉투)

(대행 봉투)

18cm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49cm	<p>자치단체문장</p> <p>쓰레기봉투(20ℓ)</p> <p>-가정용 기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활용품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후 버려야만 수거합니다. 3.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 과태료에 처합니다. <p>마포구청장</p> <p>(전화) 마포구 청소과 : 324-6000</p> <p>※ 이 봉투는 ○○동과 ○○동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p>

18cm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49cm	<p>자치단체문장</p> <p>쓰레기봉투(20ℓ)</p> <p>-가정용 기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후 버려야만 수거합니다. 3.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 과태료에 처합니다. <p>마포구청장</p> <p>○○업체</p> <p>(전화) 마포구 청소과 : 324-6000</p> <p>○○대행업체 :</p> <p>※ 이 봉투는 ○○동과 ○○동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p>

41cm

비고 : 1. 가정용추가 및 사업장용봉투는 각각 “가정용추가”, “사업장용”으로 표시하고, 10ℓ·50ℓ·100ℓ용은 위 예시에 따른다.
 2. 실제 사용할 쓰레기 봉투제작시에는 봉투상단에 봉투용량에 포함되지 않

는 여분을 두어 쓰레기를 담은 후 묶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직영지역은 해당 구표시만 하고, 대행지역은 구와 업체명을 함께 표시하며 여분부분의 표시는 굵은선으로 한다.

(별표 3) 쓰레기봉투 판매소 표시(제21조제3항 관련)



비고 : 1. 표지판의 크기는 담배판매소 표지판의 크기로 한다.
 2. 글씨위치는 표시의 하단접점으로부터 표시지름의 1/10만큼 띄어서 중심맞춤으로 표기한다.
 3. 글씨체는 견출고딕 평2체물 쓰도록 하며, 글씨의 크기는 표시지름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
 4. 표시의 색은 상기와 같이 청색(DIC : 137)·녹색(DIC : 92)2도로 표현하거나 청색(DIC : 579)·녹색(DIC : 643)·검정색·흰색·금색 또는 은색의 단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4. 4. 9.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 1994. 4. 9.
 다. 상정일자 : 제22회임시회 제1차위원회 (1994. 4. 11)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시민국장 강신재)
 가. 제출이유
 지방재정시행령 제156조 개정에 따라 기금담당공무원 관직명칭이 변경되어 동 조래중 기금회계직 공무원의 해당조항을 개정, 법체계의 통일성을 확보코자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기금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금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4. 4. 11
 시민보건의위원회